

2017년 제10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7년 제10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25일
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

I 시험 계획

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채용분야	직 급	선발 인원	근무기간	직무내용
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	안전관리· 점검(건축)	지방시설서기 (일반임기제)	1명	2년 (주40시간)	○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(건축분야) ○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 ○ 실과소 및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○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
	안전체험 교육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4명	1년 (주35시간)	○ 이동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○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전 ○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

II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

채용자격기준

- 응시자격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

※ 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일

【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】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응시연령

- 8급 상당 이하 (일반임기제,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)

- 안전관리·점검(건축) 및 안전체험교육
: 18세 이상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○ 거주지 : 제한없음

○ 자격기준(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)

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1항 제4호)

직무분야	자 격 기 준
안전관리·점검 (건축) (시민안전과)	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----- ○ 관련분야(경력) :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기업에서 건축 분야 안전 점검 등 재난 안전관리 분야 관련 근무

직무분야	자 격 기 준
안전체험교육 (시민안전과)	<p>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hr style="border-top: 1px dotted black;"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(경력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관련 근무경력 또는 안전체험차량 운행 근무 경력자 ○ 우대사항 : 대형운전면허 소지자

□ 시험방법

- 1차 시험 : 서류전형
 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- 2차 시험 : 면접시험
 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 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
 -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

□ 채용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17. 9. 25.(월) ~ 10. 12.(목)	'17. 10. 10.(화) ~ 10. 12.(목)	'17. 10. 16.(월)	'17. 10. 19.(목) ~ 10. 20.(금)	'17. 10. 23.(월) 전·후

- 접수장소 :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(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)

*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

-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(09:00~18:00 / 점심시간 제외 12:00~13:00)

-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공고 확인 : 용인시청 홈페이지(www.yongin.go.kr) 시험정보란

-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
-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
□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 1부(소정양식)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(3.5cm×4.5cm) 2매 부착

- 응시수수료(수입증지) ※ 수입증지 판매처 :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

○ 안전관리·점검(건축) / 안전체험교육 분야 : 5천원

○ 이력서 1부(반명함판 사진부착)

○ 자기소개서 1부(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)

-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

○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부(원본제출)

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,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

※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(해당자에 한함, 원본 제출)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/원본 제출)

①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,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

(팩스,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)

②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

※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행처 날인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
※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불임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

- 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
 - ※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
[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(<http://www.nhis.or.kr>)]
 - ※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
 - 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, 미제출 시 불인정
 - ※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/ 미제출 시 불인정
-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 / 원본 반드시 지참)
 - 직무수행계획서 1부
 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- ✓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.
- ✓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졸업증명서 등 학력, 경력증명서, 어학 능력성적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
-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.

III 기타 사항

□ 보수 및 근무시간

- 근무기간 :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
- 연 봉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, 하한액의 120%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약정기간	연 봉 액		週당 근무시간
				하한액	하한액의 120%	
안전관리·점검(건축) (시민안전과)	지방시설서기 (일반임기제)	1명	2년	35,823천원	42,987천원	40시간
안전체험교육 (시민안전과)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4명	1년	31,345천원	37,614천원	35시간

-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 - ※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 등
- 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 지급, 국민연금, 건강·고용·산재보험 적용
 - ※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

□ 응시자 유의사항

-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.
-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yongin.go.kr>)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		행정지원과 인사팀 (031-324-2113)
담당업무 및	안전관리·점검 (건축)	시민안전과 안전기동팀 (031-324-3746)
근무 등 문의	안전체험교육	시민안전과 안전총괄팀 (031-324-3301)